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
L'Église presbytérienne au Canada

LIFE & MISSION AGENCY
Canadian Ministries

Charitable Status Registration
2013 년 11 월

자선사업 기관의 법적 지위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.

캐나다 장로교회는 캐나다 내의 자선사업 기관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캐나다 장로교회가 자선 사역을 할 때는, 법적으로 허용되는 일만을 해야 합니다. Canada Revenue Agency 에서는 '합법적으로 등록된 자선사업 기관이 자선 활동을 하고자 할 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식으로만 일할 수 있다' 는 사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1. 해당 자선사업 기관이 지닌 고유한 목적을 성취하는 활동을 하는 것
2. 적절한 요건을 갖춘 피증여자(donee)에게 기증을 하는 것

정식으로 등록된 자선사업 기관에서 '돈이나 여타 증여품을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피증여자(개인 혹은 단체)에게 기증하는 것' 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 적절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피증여자에게 증여 활동을 한다면 합법적 자선사업 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.

캐나다 국내사역부(Canadian Ministries)를 통해, 캐나다 장로교회 교단의 개척교회 사역지·갱신 사역지·특수 사역 및 미자립 사역지에 전해지는 보조금 또한 교단과 Canada Revenue Agency 가 제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증여될 수 있습니다. 보조금을 포함한 증여 활동은 적절한 조건을 갖춘 피증여자(예를 들어 정식으로 등록된 다른 자선 기관)만을 그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.

정식 등록된 자선사업 기관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사역지로 기부된 금액에 대한 영수증을 해당 사역지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.
- 사역지에서 소득세를 면세받을 수 있습니다.

정식 등록된 자선사업 기관이 수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 자선사업 기관의 재원을 자선 목적에 알맞게 사용해야 합니다.

▪자선사업 기관이 성취하려는 고유한 자선 목적은 자선사업 기관 등록시 발생하는 책임에 부합해야 합니다.

▪T3010 즉 Registered Charity Information Return 서류를 한 회계 년도가 종료되는 시점의 6 개월 이내(within six months of fiscal year end)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
사역지에서 보조금 신청을 할 때에는 캐나다 국내사역부(Canadian Ministries)에 자선사업 기관 등록번호(registration number)를 제시해야 합니다. 캐나다 국내 사역부(Canadian Ministries)를 통해 보조금을 받는 사역지에서 피증여자에 대한 Canada Revenue Agency 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것이 발견되면, 보조금 지원이 일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중단될 수 있습니다. 물론, Canada Revenue Agency 에 자선사업 기관 등록절차가 현재 진행중임을 밝힐 수 있는 사역지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

Canada Revenue Agency 에서 제시하는 기준과 요건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역지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추가 정보가 필요하시면 www.cra.gc.ca 를 활용하시거나 캐나다 국내사역부(Canadian Ministries)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위 문서는 영어 원문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. 위 번역된 문서와 영어 원 문서를 함께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This document has been translated from English to Korean. Where there is a discrepancy, the original English document will be consulted.